

# 一. 2014년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

## 1. 개 황

### 가. 총괄사항

- 설립근거
  - 법 :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
  - 조례 :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(제2190호)

- 설립목적 —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복지 구현

- 법인설립일 : 2007. 5. 21

- 사업범위

- ▷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
- ▷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, 문화예술 교육 활동과 그 보급
- ▷ 문화 예술의 국내.외 교류사업
- ▷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,관리, 보급및 조사,연구
- ▷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및 부대사업
- ▷ 기타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 의정부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

- 운영 및 회계관리

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의 운영비는 의정부시로 부터 배정받아 수익적수익(영업수익)으로 결정하고, 집행은 수익적지출(영업비용)로 처리하며, 예산집행잔액과 수입금은 정산반환금으로 처리하고 익년도 운영비용에 편성합니다.